

朝鮮前期 護衛制度에 關한 考察

송 상 욱 (포항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권 정 훈 (경산대학 경호무도과 교수)

Consideration on Royal Guards of Early Chosun Dynasty

Song, Sang-wk

Kwon, Jeong-h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sideration is to present fundamental data for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the historical approach of Korea Protection by re-examining Royal guarding system through the history in Early Chosun Dynasty.

This paper initiated from this critical mind seeking to understand the changing phase of Korea Guarding system, and fundamentally to find the future-oriented ways for the Guarding system. The main materials of history in Early Chosun Dynasty were re-examined,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main references are a code of laws and official as well as private documents such as Kukjo-Oreyeu. Guards system for Royal prince has been found in Byung-jeon of Kyungguk-daejon. he Guards organization has dual system, one was Gumgun which was a private military man and the other was Wuibung which was a Central military man.

On the contrary, central military man were normally protected the royale palaces, but when the King come and go they accompanied and protected the King in safety zone.

But just in case they did a job as a member of capital protection military affairs. A question of finance was the reason why there had been dual protection system due to financial matter. If it increased number of man it would pay much money, therefore central military man who has no relevance to national finance were supplied as members of military affairs for the protection of king.

[key words : Early Chosun Dynasty, Royal guards, Gumgun, Central military man]

I. 서 론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건국 초기부터 병역제(兵役制)를 정비하고 군사조직을 강화하여 국방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군역은 양인개병(良人皆兵)과 병농일치(兵農一致)를 원칙으로 하였다. 초기에는 통수기관(統帥機關)으로 중앙에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두고 거기에 10위를 속하게 하였으나, 세조 때에 삼군부를 5위도총부(五衛都總府)로 개편하여 중앙군인 5위를 지휘하게 하였다. 5위는 의흥위(義興衛:中衛)·용양위(龍衛:左衛)·호분위(虎賁衛:右衛)·충좌위(忠佐衛:前衛)·충무위(忠武衛:後衛)로 궁궐수비와 서울 방비를 담당하였다. 각 위(衛)는 또

5부(部)로 나뉘었고, 각 부는 4통(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밑에 여(旅)·대(隊)·오(伍)가 있었다. 지방에는 각 도(道)에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이 있어서 육군과 수군을 통할하였고, 그 밑에 여러 진(鎭)·포(浦)·보(堡)가 있다. 이들 부대에 복무하는 지방군은 양인 계층의 농민으로서 교대로 입번(立番)하고, 하번(下番) 때에는 농사에 종사하였다(신철호, 1981).

군제(軍制)는 세조 때에 전국 군·현을 지역단위의 방위체제로 편성하는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실시되면서 중앙군과 지방군이 진(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따라서 평시에는 농사짓다가, 징발되면 서울에 번상하여 시위하거나, 지방요새지로 나아가 부방(赴防)하였다. 한편, 정규군(正規軍) 이외에 잡색군(雜色軍)이라는 예비군이 있어서 전직관료·서리·향리(鄉吏)·교생(校生)·노비(奴婢) 등 각계각층의 장정들로 하여금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향토방위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 발생하는 군사적인 긴급사태를 중앙에 급히 알리기 위하여 봉수제(烽燧制)가 있었고, 그 내용을 문서로 알리기 위하여 역마제(驛馬制)를 운영하였다.

조선시대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절대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국가권력은 왕권에 귀속되어 국왕자체가 국가였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정(王政)시대에는 국가나 개인의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왕권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호위수단의 확보로 군사적 작용을 필수적으로 동반하였고 이시기에 군사의 존재는 바로 왕의 안위와 왕권의 안정이다(이민형 외, 2007). 하지만 새로운 왕권의 옹립(擁立)이나 반대세력의 반정 등 권력 암투가 고조되었을 때 국왕은 자신의 안위(安危)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즉 호위조직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송병문 외, 2006). 조선과 같이 왕정시대에는 현대적 개념의 경호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금군(禁軍),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등의 용어로 왕을 호위(護衛)하고 호종(扈從)하는 호위집단(護衛集團)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현대의 경호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국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일원화 시킨 절대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였기에 국왕의 안전을 보위하는 호위제도도 다른 어떤 제도보다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호위제도에 대한 역사학에서의 연구는 주목을 하지 못하였다.

본 고찰에서는 조선전기의 호위제도를 파악하여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조선시대 중 특히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 시기에 많은 저항들과 난(亂)들이 한 시기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호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성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 전기의 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 경호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역사의 한 부분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자 한다.

II. 조선 전기 군사제도와 호위제도

1. 조선전기(朝鮮前期)의 배경과 호위(護衛)제도 의의(意義)

1) 조선전기의 배경

조선(朝鮮)은 1392년부터 1897년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지역을 통치하였던 왕국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왕조(朝鮮王朝)라고 하며, 내부적으로 대조선국(大朝鮮國)이라는 명칭을 어보(御寶), 국서(國書) 등에 사용하였고, 외부적으로도 제한적으로 대조선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태조(太祖) 이성계에 의해 고려(高麗)를 이어받아 개국(開國)되었으며 이후 500여 년 동안 존속되어 왔다. 조선은 유교(儒敎)에 의한 통치이념을 기본으로 임금과 신하에 의한 치(治)를 중요시 여겼다. 1388년 고려의 무신(武臣)이었던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창왕·공양왕을 왕위에 올렸다가 폐위(廢位)시키는 등 정권·군권을 장악하고 전제 개혁을 단행하였고, 경제적인 실권까지 장악하였다. 이어 정몽주가 제거되자 1392년 7월 이성계는 새 왕조를 개국하여 조선 태조가 되었다(송인주, 1997).

1393년에는 국명(國名)을 "조선"으로 고치고 1394년에는 한양으로 천도(遷都)하여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왕권승계를 두고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難)(1398년, 1400년)이 발생하였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임금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관료 제도를 정비하였다. 세종은 학문·군사·과학·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업적을 이룩하였다. 세조는 태종처럼 신권(臣權)을 제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동국통감》, 《국조보감》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성종은 개국 이후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정비하였다. 15세기 말부터 지방의 사림 세력이 정계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연산군의 거둬들인 실정에 견디지 못해 사림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중종반정을 통해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한 사림파는 명종 때 비로소 훈구파를 몰아내고 조정의 실권을 잡았다. 이때부터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봉당정치(朋黨政治)가 시작되었다(차문섭, 1995).

조선의 역사는 크게 전기(前期)와 후기(後期)로 나뉘며, 전기를 다시 둘로 나뉘 전기와 중기(中期)로 보아 전기-중기-후기로 보기도 한다. 이때 전기-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며, 전기-중기-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전기와 중기는 중종반정(中宗反正), 중기와 후기는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중종(1544년)까지를 기준으로 두었다(나영일, 1992).

2) 호위제도의 의의

조선시대에서의 호위(護衛)는 국왕을 지근에서 시립(侍立:어른을 모시고 섬), 호종(扈從:왕의 가마를 모시고 따름)은 물론이고 국왕이 거주하는 궁궐 및 도성(都城)수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국왕의 호위조직이 별개의 구분 없이 시위 및 치안과 국방임무를 수행했기에 이러한 기능이 혼재(混在)되었는데 이는 조선왕조가 국왕에게 복종하는 절대 군주제 국가의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임무들이 국왕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다고 수렴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별시위, 내시위, 우림위, 검사복 등으로 불리어진 금군과 5위체제의 중앙군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두 조직을 통칭하여 호위조직이라 할 수 있다(이상철

외, 2005). 여기서 중앙군은 지방을 제외한 중앙에 주둔 하는 군대이면서 호위임무를 병행하였으며 금군은 중앙 군제에 편입되지 않은 국왕 호위를 전담하는 특수 병종이라고 볼 수 있다. 국왕의 호위를 주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군이나 금군이나 모두 호위조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의 모든 병력과 병종이 국왕의 호위를 목적으로 하는 호위조직이었다는 사실이다(이충수, 2005).

이와 같이 호위란 왕이나 최고 지도자 또는 절대 권력자 등에 대한 안위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出現)하였으며, 이러한 호위작용의 기원은 본질적으로 원시사회에 있어서의 자위적 활동에 있었던 것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침입에 방비(防備)하고 질서유지와 사회의 안녕 등을 도모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김두현, 2005).

2. 조선전기 왕대별(王代別) 군사 및 호위제도

태조(太祖 1392~1398) 이성계(李成桂)에 의해 개국된 조선왕조는 건국초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군(禁軍)의 강화와 궁궐(宮闕)과 도성(都城)을 중심으로 한 수도방위(首都防衛)의 중앙군(中央軍)강화에 노력을 경주했고, 병권(兵權)을 장악하기 위해 삼군통제부(三軍統制府)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하고 10위군을 중·좌·우군의 3군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이어 10위(衛)를 10사(司)로 개칭하는 등 대내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장철원, 2003). 정종(定宗 1398~1400)은 즉위 초부터 사병혁파론(私兵革罷論)이 논의되고, 제2차 왕자의 난은 왕위를 둘러싸고 일어난 방위과 방간의 싸움으로 서로 사병을 동원하여 교전하였다. 처음으로 추진된 조치로는 정종 2년 감사 제도의 확립이었다(김재형, 1999).

사병가운데 신뢰할 수 있고 무세가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감사로 편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중앙군의 핵심 기간병(基幹兵)으로 삼았다. 이들은 10사 50명(領)중 1명에 각각 20명 씩 편성하여 궁성시위(宮城侍衛)와 도성내외(都城內外) 및 순찰(巡察) 및 경비임무(警備任務)의 핵심을 이루게 하였다(이충수, 1997). 태종(太宗 1400~1418)즉위년 별시위는 이중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선발하여 창설된 국왕 측근 의장대 겸 시위대였으며, 친군위는 태조 이성계의 출신도인 함경도 군사를 우대하기 위해 조직한 것으로 친군위 지휘는 왕자를 비롯하여 종친과 훈신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그의 임무는 궁성을 시위하고 왕의 행행에 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으며, 아울러 왕실의 정보기관의 성격도 띄고 있었다. 태종 7년(1407)에 내금위는 궁중에 입직숙위(入直宿衛)하던 내상직을 개편한 것으로 이들은 최초 태종의 신임을 받는 병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는데 처음에는 60~90명의 소수에 불과한 정예부대로 내금위범제사(內禁衛範制使)에 의해 통솔되었다(태종실록 14권).

태종 9년(1409)에 중앙군인 10사의 임무분담을 시위 4, 순위 6의 비율에서 시위 9, 순위 1의 비율로 개편하여 중앙군을 왕권보호를 위한 시위임무를 치중하게 했다(태종실록 18권). 아울러 태종은 10사를 시위중심의 중앙군으로 편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왕권보호와 신변보호

를 위해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내시위(內侍衛), 겸사복(兼司僕), 방패(防牌), 근장(近仗), 충의위(忠義衛) 등의 별도의 친위병종(親衛兵種)을 설치하였다(이충수, 1997). 태종 18년(1418)에 당시 사복시(司僕時)가 세자의 출입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말을 관할하는 사복시에서 말에 대한 수발만이 아니라, 세자의 호위까지도 책임을 맡게 되는 데에서 하나의 병종으로써 위치를 굳히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겸사복은 내금위와 같이 근위군사로서 왕의 측근에서 근무를 하는 금군이였다(김두현, 1995).

태종이 세종(世宗 1418~1450)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10사에 용분사(龍奮司), 호아사(虎牙司)를 더하여 12사로 증편되어 삼군에 4사씩 분속하게 되었고, 세종 10년에는 도성의 수비와 순찰업무를 전담하는 병조예하에 도성위(都城衛)와 도성경부소(都城警付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도성위는 도성전체의 방위임무를, 도성경부소는 도성내 각지역에 배치되어 실제적인 경비임무를 담당하게 했다(이충수, 2005). 세종 21년(1439)에 내금위가 교대로 근무하는 병종이 아니라 교대가 없는 장번(長番)군사로 많은 병종 가운데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다.

문종(文宗 1450~1452)원년 호위대인 중앙군은 5군(軍), 4진(陣), 5위(衛)의 계열을 잇는 진법체제와 부합되는 5사로 개편되었다. 이들은 5교대로 궁궐이나 도성의 입직(入直)(경비근무), 출직(出直)(훈련근무), 행순(순찰근무)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2사의 병력을 5사에 분속시켰으며 여기에는 지휘계통을 달리하는 각종 특수병들까지도 거의 모두 포함시켜 하나의 지휘체제로 묶어 놓은 것이다(차문섭, 1995).

세조(世祖 1455~1468)3년 5사에 분속되지 않은 병종으로 인해 시위시에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사(司)를 5위(衛)로 개혁하고 모든 군사를 병종별로 5위에 분속시켰고, 5위로 개혁되면서 3군부는 5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바뀌어 중앙군을 지휘하였다. 이와 같이 5위로 개편된 중앙군은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병종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내금위나 겸사복, 우림위(羽林衛) 등의 왕의 친병 계열의 병종은 5위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는 5위 제도가 확립되므로 말미암아 친병과 위의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친병은 왕의 신변을 직접보호하고, 5위병은 궁궐이나 도성 등의 수도경비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강성문, 1993).

예종(睿宗 1468~1469)원년 5월에 오위제도(五衛制度)가 하나의 제도로서 고정화되어 그 소속 병종에 대한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예종실록 5권). 성종(成宗 1469~1494)23년에는 특수신분층인 서얼(庶孽)출신을 대상으로 편성된 금군인 우림위는 내금위나 겸사복 등의 금군이 부방(赴防鎭는선북변경에 파견되어 복무하는 것)하는 사례에 의해 발생된 금군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종 22년에 별시위는 해외원정(海外遠征)에도 참가족 22허종의 북정사(北征司)를 들 수 있다. 즉, 별시위, 감사 등의 전투력을 평가하여 원정군을 주축(主軸)으로 삼으려 했다.

연산군(燕山君 1494~1506)10년에 우림위는 일단 폐지되었다. 연산군 11년 5월에 내금위는 충철위(衝鐵衛)로 개칭되었고 예차내금위(預差內禁衛)는 소적위로 개칭되었으나 실제로 이들은 정해진 수보다 더욱 많아 체아직(遞兒職)의 부족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기록들이 보일 만큼

왕의 측근 시위병으로서 가장 강력한 병종이었다(차문섭, 1995). 중종(中宗 1506~1544)1년에 우림위가 다시 설치되어 금군의 기능을 다시 하게 되었다. 중종 5년 왕권호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차, 예차, 가예차로 인원수를 늘려 금군의 중차가 되었다. 중종 7년에 정로위(定虜衛)는 우림위와 마찬가지로 내금위 등이 변란이 있을 때마다 부방하게 되어 금군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종이었다(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원, 1978).

3. 조선전기 군사제도와 호위제도

1)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와 10위(衛)

조선 건국 초 중앙군은 고려의 2군 6위에 의흥친군좌·우위(義興親軍左·右衛)를 신설하여 10위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10위의 핵심 병종은 바로 갑사(甲士)이다. 그리고 의흥친군위는 고려말의 도총중외제군사부(都總中外諸軍事府)를 이성계가 즉위하자마자 바꾼 것으로 그 지휘는 왕자를 비롯하여 종친과 훈신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맡겨졌다(송영성, 1997) 이로 볼 때 의흥친군위는 조선 건국과 더불어 설립된 10위의 핵심이었지만, 왕실의 사병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임무는 궁성을 숙위하고 왕을 호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두현, 1995). 즉, 10위의 실체는 왕실과 훈신들의 사병(私兵)적 성격을 가진 시위패(侍衛牌)였다. 이러한 특수한 성격의 조직 형태는 태조 2년 의흥삼군부를 설립함으로써 사병적 성격의 중앙군을 개혁하기에 이르렀으며, 10위의 명칭을 10사(司)로 고치고, 3군에 분속하게 하였다(차문섭, 1995). 이에 따라 의흥삼군부는 기존의 숙위 기능을 가진 시위패를 모두 흡수함으로써,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10사는 4시위사(侍衛司)와 6순위사(巡衛司)로 나누어져, 기능별로 4:6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이때까지 사병적인 시위패에 대한 실질적 감독 및 규제는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병은 정종 대에 이르러 왕자의 난 뒤 실권을 가지게 된 이방원으로 인해 사병이 혁됨으로써 시위패는 모두 실질적으로 3군부에 귀속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사병 혁파는 곧 왕권 확립의 일환으로써 이에 따라 왕실 경호조직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장철원, 2003).

태종 9년 10사는 9시위사와 1순위사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왕궁 시위에 집중하게 되었다.¹²⁾ 그 후 태종 18년 세자에게 양위를 함으로써 상왕 태종과 주상인 세종의 양왕(兩王)을 분담하기 위해 12사로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태종이 승하함으로써 2사가 폐지되었고, 문종 1년(1451)에 다시 5사로, 그리고 다시 세조 3년(1457)에 5위제도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5위제도는 조선 전기 중앙군제로 정비·확립되었다(차문섭, 1995).

2) 금군(禁軍)

12) 시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경찰 업무를 담당했던 병력으로서 도부외(都府外)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1) 5위군(五衛軍) 내 호위 조직

5위군의 핵심 병종으로 갑사(甲士)가 있었으며, 정종 대에 사병이 혁파됨에 따라 설치되어, 시위 중심의 10사로 개편되면서 태종 18년에 정식 직첩(職牒)이 내려졌고, 1년에 두 번씩 양반 자제들 중 시험으로 선발하였다. 또한 10사 체계에서는 1사 5령(領)의 50명 중 각 1명에 20명씩 배속되어 국왕 호위와 수도 경비를 담당하였으나, 금군이 내금위, 별시위, 겸사복 등으로 확대 정비됨으로써 그 기능이 궁성 및 도성 경비·순찰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5위군 내 가장 대표적인 호위 조직으로 별시위(別侍衛)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국왕 근접 호위였다(김재형, 1999). 별시위는 태종 즉위년(1339)에 처음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고려 말 국왕 호위조직이었던 성중애마가 혁파되어 삼군부에 소속시킴으로써 성립되었으며, 기병종(騎兵種)으로서 기인마(騎人馬)를 준비할 수 있는 재력가만을 가려서 시취(試取)하였다(김광기, 1998).

세종 말 이후 내금위, 갑사, 별시위 선발을 동일한 과목으로 동시에 실시하여 성적순에 따라 병종을 달리해서 선발하였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갑사보다도 오히려 우위에 두고 있고, 전원이 체아직을 받고 있다(이충수, 2005). 그 규모는 세종 즉위년(1419) 12월 당시 4번 각 50인 모두 200명이었다. 그 후 세종 중엽 이후 인원수가 늘어 3,000에까지 이르지만, 왕의 측근에서 시위하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별시위는 성중관(成衆官)으로 지칭되면서 일반군사와는 달리 취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왕의 측근을 시위하는 특수 군종의 하나였기 때문이다(장철원, 2003). 별시위는 왕 이외 중요 인물의 호위도 담당하였으며,¹³⁾ 국가 중요 의식(儀式)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비상소집 훈련인 취각령(吹角令)에는 갑사·내금위와 함께 국왕을 시위하였으며, 이외에도 야인 정벌 참여와 도성 순찰 등의 경찰 활동도 겸하였다(이충수, 2005).

(2) 국왕 친위(親衛) 조직

국왕의 친위조직은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를 들 수 있다. 우선 내금위는 태종 7년(1407)에 궁중 숙위를 담당하던 내상직(內廂職)을 개편한 조직으로, 60~90명의 소수 정예 부대이며, 내금위장(內禁衛將)¹⁴⁾의 통솔 하에 왕의 최측근에서 신변호위를 담당하였다. 세종 6년에는 내시위(內侍衛)¹⁵⁾가 통합되어 최종 190명으로 확대되었다. 내금위는 양반 자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교대 병종이 아니라 장기간 궁중에 입직 숙위하는 장번군사(長番軍士)였기 때문에 그 대우에 있어 다른 병종보다 우위를 점하였다 또한 무제가 뛰어난 자들 중 국왕이 신임하는 요원들로만 조직되어 전원 체아직을 받았다(차문섭, 1995).

13) 태종 대에 태상왕인 태조의 함경도 행에 호종하였으며, 명의 사신이 왔을 때도 호위하였다.

14) 또는 내금위절제사(內禁衛節制使)라고 했다.

15) 내시위(內侍衛)는 태종 9년(1409)에 신설되었으며, 좌·중·우 3번의 120명으로 국왕의 시위를 담당, 양반출신에서 발탁되어 내금위와 그 직책·임무가 유사했다. 그 후 세종 6년(1424) 5월에 이르러 내시위는 내금위 설치 이후 내금위의 예에 의거하여, 1번에 위군 30명과 절제사 2명을 두었는데 입번하는 군관의 수가 적고, 절제사 2명을 차출하는데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금위로 통합하였다.

겸사복은 고려 병조(兵曹) 속아문(屬衙門)인 궁중의 가마·말·외양간 및 목장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사복사(司僕寺)와 관련되어 신설된 것으로서, 마(馬)를 관할하는 사복사에서 말에 대한 수발만이 아니라 세자의 경호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하나의 병종으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⁶⁾ 내금위와 더불어 근시군사(近侍軍士)로 왕의 측근에서 근무하는 금군 중 하나로서 인원 및 지위가 내금위와 유사한 장번 군사로 추정된다. 겸사복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신분보다 무재(武才)인 무예(武藝)와 용력(勇力)을 더 중시하여 이를 구성한 계층이 양반에서 서얼·양민·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선발규정은 내금위에 준하였다.

이러한 겸사복은 국왕 친위병으로 내금위와 더불어 국왕의 시위를 담당했으며, 신변보호를 위한 엄격한 시위(侍衛)·배종(陪從) 또는 수가(隨駕)·의장(儀仗)과 왕궁호위(王宮護衛)를 위한 입직(入直)·수문(守門) 등을 행하여 그 신임도가 높았다(김광기, 1998).

우림위는 내금위·겸사복 등 금군의 빈번한 서복 변방 파견복무로 인한 금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성종 23년에 창설된 것으로, 서얼 출신의 중앙 관계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그 구성 요원은 무재가 있는 서얼 출신자들이었다. 초기에는 교대 근무하였으나 이후 장번 근무로 바뀌었으며, 지위는 내금위나 겸사복만은 못했으나 감사 또는 별시위 보다는 우위였다. 또한 우림위장(羽林衛將) 3명에 의해 통솔되었고, 이들의 선발과 훈련은 내금위의 예에 준하였다(이충수, 2005). 우림위 편제는 종2품의 우림위장 3명으로 타관이 겸할 수 있었으며, 첩자(妾子)로 구성된 특수병으로 우림위 50명(종4품-종9품)으로 장번(長番)을 하였다. 그리고 서리(胥吏)인 녹리(錄吏) 2명과 서리(書吏) 3명으로 한 총 58명으로 구성되었다(장철원, 2003).

3) 조선 전기의 사병 호위제도

사병(私兵)이란 권세를 가진 개인이 사사로이 길러서 부리는 병사로서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 사적으로 소속되어 그 대가로 일정한 재화를 받고 이에 군사적 행위로 답하는 병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초에는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즉 국가의 공병체제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 그리고 사적 존재로서 국왕이 사사로이 병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까지도 발견되기 때문이다(전철기, 1999).

조선 건국 초 호위 제도에 관하여 고찰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병의 실질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선왕조가 개창한 이후 국왕의 호위는 주로 궁중의 내상직이 도맡았으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정규 호위병의 창설이 시급했으며, 태조는 혁명 초기 가담세력의 사병을 일괄적으로 혁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강력한 사병을 지녀야 했다(장철원, 2003).

조선 건국 초 사적(私的)호위조직으로서의 사병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지는 것이 바

16) 태종 18년(1418) 당시 사복사가 세자의 출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겸사복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으며, 세자의 호위와 관련 있다고 추정한다.

로 조사의(趙思義)의 난(亂)에 동원된 가별초(家別抄)의 존재이다. 이러한 가별초는 그 기원을 보건대 고려 말부터 동북면의 토호(土豪)나 여진(女眞)의 추장(酋長)은 많은 양민을 사점(私占)하고 이들은 관하(管下)라고 호칭하였는데, 동북면에 이러한 제도가 발달한 것은 이 지방이 노비제가 발달하지 않았고,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유·이민이 들어와 이들이 공민왕 이후 국가로부터 조세를 면제받는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은 지방 유력자에게 사적으로 점유되었으며, 몽고 침입 후 그리고 고려가 이 지역을 되찾은 이후에도 계속 그 특권을 보장해준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가별초는 이 관하라는 특수한 사회관계를 매개로 발생한 군사 집단으로 볼 수 있다(전철기, 1999). 이러한 가별초는 말 그대로 '집(管下)에서 가려 뽑은 무리'이며, 특징은 왕실이나 공신계열에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강력한 사적 예속을 전제로 하고,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무장집단이라는 것이다(차문섭, 1995).

조사의의 난은 태종 이방원을 몰아내고 이성계의 재건을 다시 추구하고자 발생하였으며, 그 세력은 이 가별초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그것이 동북면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내포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이와 같은 특징의 사병적 조직은 만연해 있었고, 그 임무가 정권을 찬탈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공격성을 지니면서도 그 실질은 군사적 운용과 그 조직의 장을 근시 호위하는 것이 그 임무라고 추측되며, 이성계가 함흥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가별초라는 특수 호위 조직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민형 외, 2008).

III. 호위의 체계와 호위 활동의 절차

1. 국왕 호위체계

1) 준비절차

사흘 전에는 담당관리가 행사관련 부서 관원에게 행사준비를 지시하고 이틀 전에는 장악원(掌樂院)에서 악기를 근정전(勤政殿) 뜰 남쪽에 달아놓고 전설사(典設司)¹⁷⁾에서 왕세자의 막차(幕次:임시거처)를 광화문 밖 동쪽에 설치한다. 하루 전에는 통례원(通禮院:국가의식담당관청)에서 광화문 밖에 왕세자 및 문무백관(文武百官)의 시위(侍位)위치를 설치한다.

행사당일에는 북이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를 거느리고 대가(大駕), 노부(函簿)를 홍례문 밖에 정렬하고 시종하는 관원 2명은 검을 차고 다른 관원 2명은 활과 화살을 차고 합문(閤門:국왕거처인 경전앞문) 밖으로 나가서 대기한다(이충수, 1997).

북이 이엄을 알리면 여러 위(衛)에서 각각 그 부대를 지휘하여 진열하며 사복시정(司僕侍正)이 국왕의 큰 가마인 연(輦)을 근정문 밖에 대기시키고 여(輿)를 사정전 합문 밖에 모두 남쪽을 향해 대기시킨다. 이때 병조(兵曹), 도총부당상관, 5위장, 내금위장, 검사복장 등은 운검을 차고 갑옷·투구·궁시를 갖춘 상호군(上護軍) 14인 및 검사복, 사금(司禁)이 기복(器

17) 행사시 사용하는 장막(帳幕)의 공급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服)을 갖춘 국왕 근접에서 무기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호위조직은 사정전 합문 밖에서 대기한다. 북이 삼엄을 알리면 국왕이 작은 가마인 여를 타고 나오며 대가가 근정문 밖에 이르면 국왕이 여에서 내리고 연을 갈아탄다(김재형, 1999).

대가가 출발하면 의장 및 시위대가 호위한다. 대가가 광화문 밖 시신(侍臣) 상마소(上馬所;말타는 곳)에 도착하면 어가가 잠시 정지하는데 이때 시위 관원들이 좌·우에서 어가를 호위하고 시신들이 모두 말에 오르면 대가는 출발한다. 이때 국왕의 어가가 정지하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사면(四面)에서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대가가 재궁(齋宮;제사를 준비하는 집) 대문 밖 시신 하마소(下馬所;말내리는 곳)에 도착하면 시신들이 말을 내리는 동안 어가가 잠시 머문다. 대가가 대문에 도착하면 국왕이 연에서 내려 여를 갈아타고 출발하는데 이때 대가 노부는 대문 밖에서 대기 한다. 국왕이 여를 타고 막차에 도착하고, 이어 행사를 거행한다. 행사를 마치면 재궁으로 돌아오면 재통례(在通禮)가 해엄(解嚴)하기를 계청(啓請)한다. 국왕이 재궁에 머물러 1각(刻)즈음 되면 북을 쳐서 초엄을 알리고 대가 노부를 정렬한다(이상철 외, 2005).

국왕이 재궁에 머물러 3각이 되면 북을 쳐서 이엄을 알리고 연을 대문 밖에 여를 재궁 앞에 대기시킴과 동시에 여러 호위관원 및 사금(司禁)이 각각 기복을 갖추고 재궁 앞에 대기한다. 국왕이 재궁에 머문지 5각이 되면 북을 쳐서 삼엄을 알리며 여를 타고 출발한다. 대가가 대문에 도착하면 여에서 내려 연으로 갈아 탄고 대가가 시신들의 상마소에 도착하면 시신들이 말을 탈 동안 어가가 머물고 이때 시위 관원들은 어가를 좌·우에서 호위한다. 대가가 경복궁 밖의 시신 하마소에 도착하면 시신들이 내릴 동안 잠시 머물고 출발한다. 대가가 근정문 밖에 도착하면 연에서 여로 갈아타면 국왕이 합문에 이르고 궁으로 돌아가면 재통례는 해엄을 아뢰고 병조는 교지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한다(이충수, 2005).

2) 호위조직의 임무 체계

(1) 호위조직의 활용 특징

국왕 호위 시 병력은 다중 차단선을 설정하고 중심(從心)¹⁸⁾ 깊게 배치하였다. 조선시대의 차단선은 4선(線)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국왕 위치와 가까운 1·2선에는 금군 및 의장대를, 3·4선에는 중앙군을 좌·우·전·후 대칭으로 배치하여 물살 틈 없는 방어막을 형성하였다. 또한 국왕 거동 시에는 공방(工房)과 예방(禮房)에서는 사전 이동로에 따른 도로 정비, 교량 보수 등 사전 안전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동 간 길옆에 위치한 가옥 앞은 등불을 매어 달고 집 거리까지는 엄중히 경계하였다. 최소한 위해 가능한 지근거리 내에서 가옥 모두들 보안 사찰 실시한 것으로 여겨진다(김재형, 1999).

병력 배치 시 병종의 기능과 능력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국왕이 위치한 장소에 근접할수록 시위능력이 우수한 병종의 병력을 집중하여 비치하였고, 원거리 일수록 행사시 일회적으

18) 군사(軍事)용어로 공간, 시간 및 자원상의 작전범위를 말한다.

로 동원되는 병력을 배치하여 경제적인 병력 운동을 피하였다.

국왕의 호위 형태는 그 병력과 활동이 완전히 노출되었으며, 강력한 통제(統制)위주의 방법을 취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행사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호위보다 국왕에 대한 의전(儀典)이 절대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의전 및 의장(儀仗)인원과 호위조직이 동원되었다. 이는 국왕의 강력한 권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호위 형태라 할 수 있다(이충수, 2005).

(2) 호위조직의 임무 형태와 행사장 임무활동

국왕 호위시 금군(禁軍)과 중앙군(中央軍)의 임무 형태는 달랐다. 금군은 무장하고 국왕 주변에 집중 배치되어 신변보호, 대적 및 대피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참석자 출입구 및 주위에 배치되어 감시망을 구성하였다. 또한 중앙군 배치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군의 근무를 감독하기도 하였고, 취약 지역에 배치되어 복병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차문섭, 1995).

중앙군은 행사장 내곽에 집중 배치되어 외부 불특정 인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벽(人壁)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인벽은 병력을 1~2m 간격으로 3~4열(列)로 중첩 배치한 차단선으로, 바깥 열 병력은 행사자 참석과 동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중첩 고정 배치를 하였다. 이중 의장병(儀仗兵)들은 각종 깃발 등을 들고 인벽을 구축하므로 참석자 및 일반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국왕의 권위를 드높여 위해분자의 범의(犯意)를 사전에 포기케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김광기, 1998).

행사 참석자들은 국왕 임석 장소로부터 약40~5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착석 또는 기립상태로 참석하였다. 국왕과 참석자 사이 공간에는 무장한 금군을 배치하여 참석자들이 국왕 주변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참석자들도 신원이 확실한 고위 참석자들은 국왕 임석 장소에 가까운 위치로, 일반 참석자는 원거리 위치에 착석토록 하였고¹⁹⁾ 모든 참석자와 신하들은 일체의 무기 등 위험물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왕 친임(親臨)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운집한 일반 백성들은 원거리로 이격된 일정한 장소에서 구경토록 허용하였으며, 이들 주위에 금군 및 중앙군 감시병을 배치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²⁰⁾ 행사 참석자들이 행사장 내로 입장하는 출입구는 1개 장소로 단일화하고, 옥외 행사장인 경우에는 중앙군으로 하여금 인벽을 중첩 배치하여 차단막을 형성하고 1개의 출입구만 만들어서 금군 및 중앙군 근무자를 비치하여 신원 및 휴대품 등을 확인토록 하는 효율적인 임무 활동을 하였다(장철원, 2003).

국왕이 참석하는 행사장에는 외부의 불특정 인원이 조망하지 못하도록 장막을 설치하거나

19) 국왕 가까이에는 가능한 신원이 안전한 참석자를 배치하여 참석자에 의한 직·간접 위해 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20) 조선왕조시대에 국왕행사는 빈도수가 매우 적어 일반 백성들의 구경감이 되어 많은 인원이 운집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절대왕조 시대지만 행사장 주변에 일반백성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감시하는 근무자를 배치하여 허용하였다.

루대(樓臺)에서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가(御駕) 이동시에는 연(輦)을 사용하고 정지 시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직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국왕 이동시 주변의 높은 건물이나 봉우리에는 척후병을 배치하여 위해분자의 침투 및 은거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이동 통로 좌우측 취약지역에는 복병(伏兵)을 배치하여 돌발상황 발생 시 기동타격대 및 예비대 임무를 수행 하였다.

(3) 호위조직의 장비

국왕 호위조직의 휴대장비는 병종(兵種)과 기능(機能)에 따라 상이했다. 호위무기는 주로 창, 장검(長劍), 검(劍), 궁(弓; 활), 모(矛; 병차에 세우는 창류), 극(戟; 의례 및 의장용 창류), 간(干; 방패류), 월(鉞; 도끼류) 등을 사용하였으며 복제는 갑(鈔)옷, 주(冑; 투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금군은 검, 궁, 갑옷 등으로 무장하여 실질적인 국왕 신변보호와 위해분자에 대한 대적 임무를 수행했으며, 중앙군은 방망이, 의장용 창 등을 휴대하고 기능별로 오례의(五禮儀)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고 감시, 차단 및 의장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호위 조직들의 휴대장비가 병종에 따라 상이한 것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금군은 신분 및 능력면에서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쳐 선발된 전문 직업 호위병이므로 이들에게는 국왕의 절대 신변보호에 필요한 무장을 허용한 반면에, 그러지 못한 중앙군 호위병에게는 의장의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휴대만 허락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충수, 2005).

2. 궁궐숙위 활동

1) 입직(入直)

조선시대 궁궐 및 도성에 대한 숙위(宿衛) 체계는 금군과 중앙군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였지만 조선 전기의 숙위 활동은 금군(禁軍)과 오위병(五衛兵)이 담당하였다. 입직 장병의 숙직은 3일씩 교대하되 병조 관원은 매일 교대토록 했다. 오위는 각 위의 1부씩 궁궐에 입직하되 입직하는 전날 저녁에 병조에서 그 다음날 입직할 장소와 시간을 편성하여 국왕에게 허락을 득해 도총부로 이첩하면 도총부는 하위부에 통보하여 입직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오위(五衛)의 위장(衛將)들도 국왕의 지면을 받아 분담하며 검사복장과 내금위장 등이 국왕의 지명을 받아야 했다(김재형, 1999).

입직의 책임 부서인 병조의 당상관1명과 감독 기관인 도총부의 당상관 2명은 중소²¹⁾(中所)에 숙직하되 각각 청사(廳舍)를 설치하였다. 여러 위는 숙직소 밖에 별도로 중소를 설치하고 검사복과 내금위도 그 옆에서 검사복은 3번(番), 내금위는 5번으로 나누어 숙직토록 하였다. 숙위 근무자들이 입직을 교대하는 날에는 제장(諸將)들은 대내에서 국왕에게 숙배(肅拜; 국왕에게 4배하는 절)하고 척간패(擲奸牌; 야간순찰 시 휴대 목패)를 수령 및 반납하고 병

21) 궐내의 숙직 시 병조의 당상관1명과 도총부 당상관 2명이 입직하는 숙직청사

조와 도총부에서 척간패를 관리하였으며 야간에 범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척간을 행할 때는 반드시 국왕에게 보고 후 임무를 수행하였다(이상철 외, 2005).

국왕이 궁궐 밖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도 궁궐 경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성에 남아 지키는 입직 담당 장군들이 3개소에 나누어 머무르며 매일 장소를 바꿔 근무하되 소사(小事)는 먼저 집행한 후 나중에 보고하고, 처벌 사건이 등의 대사(大事)가 발생하면 행재(行在; 국왕이 외부에 머무는 장소)때의 예에 의해 처리하도록 했다(이충수, 1997).

2) 행순(行巡)

궁궐 내외와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것을 행순이라 하며 궁궐 안에서 행순시 오위의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이 군사 10여명을 인솔하여 야간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후 이상 유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 하였다. 국왕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순장(巡將) 및 감군(監軍)과 상번(上番) 또는 하번(下番)의 위장과 부장들이 대궐에 나아가 국왕의 거소에 신고하고 당직패를 반납 및 수령하게 했다. 그리고 각 순찰 분단의 영관(領官; 입번군사의 통솔자)이 받는 패는 순장이 전부 수령하여 나누어 주도록 했으며 고유의 직책이 아니고 국왕의 지명에 의해 임명되는 순장이 그날 행순의 총책임을 지고 있었다. 궁성 4문 밖에 숙직하는 근무도 병조에서 각각 상호군이나 대호군, 호군 중에 한사람을 정하고 그들에게는 정병 5명을 배당하였다.

궁궐정문인 광화문을 지키는 정4품 관리인 호군은 초저녁에 병조에서 요령인 탁(鐸; 일종의 작은종)과 야간 순찰의 암호인 군호(軍號; 순찰군 상호 연락신호)를 받고 통행금지 시간인 인정(人定)이 되면 정병 2명으로 하여금 요령을 흔들면서 궁성을 순찰하게 하였으며 이는 파루(罷漏; 야간통행금지 해제)가 되면 그치도록 했다(김광기, 1998).

숙위 근무 편성은 병조의 입직 당상관이 매일 초저녁에 궁성 숙위대(宿衛隊)의 순찰자와 성문 파수군과 각 야간 순찰 경비초소의 당직자 명단을 작성하여 당일 사용할 군호와 함께 밀봉하여 국왕에게 상신 하였다. 만약 국왕이 도성을 떠나 부재 시에는 도성에 잔류하여 숙위임무를 담당하는 병조의 당상관이 매일의 당직자 명단과 암호를 밀봉하여 승정원에 송부하였다가 국왕의 환궁 후 사후 결재를 받았다. 도성 및 궁성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 되었으며 규정에 의해 성문을 개폐하였다. 평시에도 궁궐이나 도성 내외의 숙위를 강화하기 위해 경수소(警守所; 한성부 치안 담당 하부 기관)이외에 그 문을 지키는 파수군을 고정 배치하였다. 궁구러문은 병조가 5위의 기간병인 갑사(甲士)와 정병(正兵)을 차출하여 여러 곳에 분속시켰고 도 대졸(隊卒) 10명을 파수하게 했다. 대체로 대문에는 30명, 중문과 대문의 좌·우문에는 20명, 소문과 중문의 좌·우문에는 10명의 군사를 배치해 지키게 하였다(이충수, 2005).

3. 호위활동의 절차와 방법

조선시대 전기 호위조직을 분석해 볼 때 국왕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금군 및 중앙군의

군사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입직, 순찰, 시위 및 국왕의 거동시 호가호위 임무수행을 통해 국왕의 신변을 보호했다(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1977). 당시 호위 대상으로는 국왕과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 그 가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중 국왕에 대한 호위 관련 근거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²²⁾에서 국왕이 임석하는 행행시의 시위 및 행·환궁절차와 경국대전 병전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상철 외, 2005).

이외에 왕족시위는 태조 이성계가 함경도로 옮겨갔을 때, 별시위(別侍衛)가 시위했으며, 기타 외국사신의 왕래 시에도 별시위가 호위했다. 대상에 따른 시위와 의장은 병조에서 관장했다. 여기서 별시위는 중앙군의 소속이었으나 이때는 왕인 태조의 측근에서 근시위(近時衛)를 맡았다. 국왕의 시위행사는 크게 상참(常參)²³⁾등의 국무(國務)를 아뢰는 행사인 일상회의 행사와 각종제사나 선농, 대사, 순행(巡行) 등을 행하는 거동행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왕의 거동시 시위절차는 일련의 정형화된 순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김재형, 1999).

국왕이 친림하는 대열(大閱), 강무(講武), 순행, 타위(打圍) 및 국가적인 제사 등 각종 행사시 병조가 국왕의 명을 수령하여 그 시위계획을 작성하고, 공문을 담당 군문에 보내면 시위조직에 따라 시위하였다. 이는 왕세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시위장병은 엄고(嚴鼓)²⁴⁾를 울려서 그 신호로 통솔했다. 초엄(初嚴)²⁵⁾이 울리면 병조는 지정된 장소로 장병을 집결시키고 대, 법, 소가²⁶⁾와 노부²⁷⁾를 준비한다. 이엄(二嚴)²⁸⁾이 울리면 각위장들은 각각 그 시위장병을 통솔하여 전정으로 들어가 정열 한다. 삼엄(三嚴)²⁹⁾이 울리고 그 소리가 그치면 내·외의 문을 열고 각 시위장병은 시위임무에 들어가고 궁 밖으로 거동시 행군을 시작한다. 국왕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거처하는 궁궐로 돌아가면 병조판서가 국왕의 교지를 받들어 해엄 하면 시위 병력은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였다. 국왕친림 행사시 병력배치는 시위병력 성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배치했다. 국왕을 중심으로 근접해서 병조와 도총부 이하의 관직으로서 근무를 띤 자 및 검사복이, 그 다음으로 내금위와 별시위가, 그 다음이 입직 중앙군이 배치되었다. 이에 따른 병력배치를 기본 바탕으로 행사의 성격별로 살펴보면 국왕이 친히 제사를 행사할 때에는 기고를 장비한 시위군이 제단밖에 머물러 시위하였고, 묘(墓)나 능(陵)에 제사지낼 때는 문밖에 머물러 시위하였다. 또한 국왕이 친림하는 대소, 조하, 행사나 연회 때에는 위장들이 예하부대를 지휘하여 궁정에 정렬시키며, 병조와

22) 오례에 관하여 편찬한 책으로 세종의 명을 받아 허주 등이 고금의 예서, 홍무예제를 참작하여 ‘두씨통전’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 이어서 세조 때에 강희맹 등을 시켜 5례인 길, 흥, 가, 빈, 군중에서 실행해야 할 것을 뽑아 도식을 편찬하여 달고한 것을 성종5년(1474년)에 신숙주, 정척 등이 완성하였다. 총8권8책

23) 常參이란 의정대신(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의 국무보고를 말한다.

24) 嚴鼓 : 국왕이 거동할 때 시위하는 장병을 통솔하는 신호로 치는 큰북이다.

25) 초엄이란 첫 번째 치는 엄고로 시위장병 및 문무백관 등이 일정한 장소에 집결한다.

26) 大, 法, 小駕는 왕이 거동 때 사용하는 의장행렬의 종류이다.

27) 藁簿는 왕이 거동시 사용하는 의장 또는 의장을 갖춘 거동행렬을 말한다.

28) 이엄은 두 번째 치는 엄고로 시위장병 및 문무백관이 전정에 정열 한다.

29) 삼엄은 세 번째 엄고로 국왕이 전정에 나오고 궁 밖으로 거동시 행군을 시작한다.

5위도총부이하 군무에 직책을 가진 병(兵) 및 검사복 소속 병(兵)은 국왕의 측근에 시립하고, 내금위, 별시위 소속요원은 궁정의 섬돌 위에 정렬하여 시위하였다(이충수, 1997).

궁중에 있는 첩고(疊鼓:큰북)이 계속해서 울리면 각 문을 지키는 자 이외의 입직한 모든 위의 군사는 근정전 전정에 모여서 각각 그 방향을 정하고 정열 하였는데 병조는 사정전 남문의 좌협문인 동합문 밖에 시위하고 도총부가 그 다음 그리고 상·대호군, 위군이 이에 따랐으며 금군인 내금위는 우협문인 서합문 밖에서 시위하였고 검사복은 국왕의 바로 앞에서 시위하였다. 국왕이 첩중(疊鐘)³⁰⁾을 울려 대열을 보고자할 때에는 입직하고 있던 모든 군사가 첩고의 예에 의하여 모두 집결하고 국왕이 근정전이나 다른 문에 나오면 그 나오는 곳을 따라서 국왕을 시위하였다. 이때 오위소속의 군사들은 광화문 앞길부터 종묘, 흥인문까지 정열 하여 시위하고 위장이하가 명을 받아 이를 통솔하였다(장철원, 2003).

국왕을 직접 모시고 있는 시신들은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과 서문인 영추문에 모여 명을 기다리게 했다. 출직한 병조, 도총부, 위장, 도장, 선전관, 사복시, 내금위 및 훈련원, 군기시의 관리들은 본 청을 지키는 자 외에는 모두 광화문 앞에 모여서 명을 기다리게 했다. 이러한 국왕의 거동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시위 및 경비는 국왕의 위용뿐만 아니라 국권과 왕권이 사실상 왕권으로 귀일 되었던 당시 정치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김광기, 1998).

행군시에는 어가(御駕)를 서면에서 호위하게 하고 대로과수는 좌우로 나누어서 담당하였다. 국왕이 도성 내에 경숙(經宿)³¹⁾ 할 때나 이동할 때에는 높은 산봉우리나 기타 높다고 생각되는 곳과 취약부분에 척후병(斥候兵)³²⁾을 배치하고 통로에는 복병(伏兵)³³⁾을 배치했다. 대조회 시에는 기사12명이 기복을 갖추고 문을 지켰으며, 국왕이 교외로 거동 시에는 훈련도감에서 척후병이나 복병을 전담하였다(김재형, 1999).

국왕이 수렵시 수행한 근무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권지사 병전(兵典) '행순(行巡)'조 근무일수를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근무한다(정신문화연구원, 1995). 행재소³⁴⁾의 순찰은 국왕의 행재소를 경비하는 호위군영의 내진선을 순찰하고, 순찰임무는 오위도총관 이하의 제장 중에서 병조의 추천을 거쳐 국왕의 지명을 받은 장수가 군사 5명을 거느리고 수시로 수행한다. 그 결과는 순찰한 제장(諸將)의 장수가 직접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외진선의 순찰 및 특별순찰 임무는 대장이 지명한 위장 또는 부장이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수행하였다. 국왕의 행차 시에는 근시(近侍) 및 수종관(隨從官), 호위병을 제외하고 그 밖의 군사와 일반 백성은 모두 피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장형(杖刑) 등의 형벌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여 국왕의 신변안전을 사전에 보호 하였다.

30) 첩중은 열병때에 제대를 집합시키기 위해 궁궐내에서 치는 대중으로 타종을 치면 입직하는 모든 위병은 근정전 뜰에 모여서 각각 소정의 위치에 정렬한다.

31) 경숙이란 왕이 궁궐 밖에서 유숙하는 것을 말한다.

32) 척후병이란 정찰과 탐색을 전담한 군사를 말한다. 지금의 검측을 뜻한다.

33) 복병이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숨겨둔 군사를 말한다.

34) 행재소란 국왕이 여행 중에 임시로 머무는 숙소를 말한다.

IV. 결 론

조선시대는 국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일원화 시킨 절대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였기에 국왕의 안전을 보위하는 호위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중요시 되었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호위제도에 대한 역사학에서의 연구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고(考)에서는 조선시대 중에서 전기의 호위제도를 파악하여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조선시대 중 특히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 시기에 많은 저항들과 난(亂)들이 한 시기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호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성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 전기의 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 경호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역사의 한 부분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자 했다.

조선건국의 초기 중앙군은 고려의 2군 6위에 의흥친군좌·우위(義興親軍左·右衛)를 신설하여 10위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10위의 핵심 병종은 바로 갑사(甲士)이다. 그리고 의흥친군위는 고려말의 도총중외제군사부(都總中外諸軍事府)를 이성계가 즉위하자마자 바꾼 것으로 그 지휘는 왕자를 비롯하여 종친과 훈신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맡겨졌다. 5위군의 핵심 병종으로 갑사(甲士)가 있었으며, 정종 대에 사병이 혁파됨에 따라 설치되어, 시위 중심의 10사로 개편되면서 태종 18년에 정식 직첩(職牒)이 내려졌고, 1년에 두 번씩 양반 자제들 중 시험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5위군 내 가장 대표적인 호위 조직으로 별시위(別侍衛)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국왕 근접 호위였다. 국왕의 친위조직은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 건국 초 사적(私的)호위조직으로서의 사병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조사의(趙思義)의 난(亂)에 동원된 가별초(家別抄)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존재가 나타났다.

국왕의 호위체계와 절차에서는 사흘 전부터 행사 당일 까지 시간적으로 세부 사항까지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호위조직의 운용은 중심 깊게 4선의 개념으로 임무를 수행시키게 하였다. 국왕 호위시 금군(禁軍)과 중앙군(中央軍)의 임무 형태는 달랐다. 금군은 무장하고 국왕 주변에 집중 배치되어 신변보호, 대적 및 대피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석자 출입구 및 주위에 배치되어 감시망을 구성하였다. 또한 중앙군 배치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군의 근무를 감독하기도 하였고, 취약 지역에 배치되어 복병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호위조직의 장비로는 금군의 경우 검, 궁, 갑옷 등으로 무장하여 실질적인 국왕 신변보호와 위해분자에 대한 대적 임무를 수행했으며, 중앙군은 방망이, 의장용 창 등을 휴대하고 기능별로 오례의(五禮儀)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고 감시, 차단 및 의장임무를 수행하였다.

궁궐의 숙위활동에서는 크게 입직과 행순으로 나뉘었다. 조선시대 궁궐 및 도성에 대한 숙위(宿衛) 체계는 금군과 중앙군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였지만 조선 전기의 숙위 활동은 금군(禁軍)과 오위병(五衛兵)이 담당하였다. 입직 장병의 숙직은 3일씩 교대하되 병조 관원은

매일 교대토록 했다. 그리고 행순이란 궁궐 내외와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것을 말하며 궁궐 안에서 행순시 오위의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이 군사 10여명을 인솔하여 야간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후 이상 유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 하였다.

조선시대 전기 호위제도를 분석해 볼 때 국왕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금군 및 중앙군의 군사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입직, 순찰, 시위 및 국왕의 거동시 호가호위 임무수행을 통해 국왕의 신변을 보호했다. 당시 호위 대상으로는 국왕과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 그 가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중 국왕에 대한 호위관련 근거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³⁵에서 국왕이 임석하는 행행시의 호위 및 행·환궁절차와 경국대전 병전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국왕의 호위행사는 크게 상참(常參)등의 국무(國務)를 아뢰는 행사인 일상회의 행사와 각종제사나 선농, 대사, 순행(巡行) 등을 행하는 거동행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왕의 거동시 호위절차는 일련의 정형화된 순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위의 내용들을 고찰한 결과 조선전기 호위제도는 바로 왕을 비롯한 그 직계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와 준비단계를 거쳐 시립·배종·의장을 바탕으로 왕궁호위를 위한 입직·숙위·수문 등의 임무수행으로 행하여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의 역할은 실로 다양하였으며 하나의 공통점은 국왕의 지근이나 도성이나 궁궐의 내부나 외부 어느 곳이든지 이들 모두가 국왕의 안위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35) 오례에 관하여 편찬한 책으로 세종의 명을 받아 허주 등이 고금의 예서, 흥무예제를 참작하여 '두씨통전'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 이어서 세조 때에 강희맹 등을 시켜 5례인 길, 흥, 가, 빈, 군중에서 실행해야 할 것을 뽑아 도식을 편찬하여 탈고한 것을 성종5년(1474년)에 신숙주, 정척 등이 완성하였다. 총8권8책

[참고문헌]

- 고동영(1993). 『한국상고무예사』, 서울 : 혼뿌리.
- 국사편찬위원회(1975). 『조선조의 연구』, 서울 : 탐구당.
- 국방군사연구소(1994). 『한국무기발달사』, 국방부.
- 김광기(1998). 「조선시대 무예사를 통한 경호제도의 고찰」,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두현(1995). “조선왕조 시대의 경호법원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공안 행정학회.
- 김두현(1996). 『경호학개론』, 서울 : 쟁기출판사.
- 김두현(1995). “우리나라 경호제도의 사적고찰을 통한 현행 경호행정조직의 발전방안 모색”,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 김재형(1999). 「조선시대 왕실호위군의 사적 고찰」, 용인대 석사학위논문.
- 나영일(1992). 「조선조의 무사체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법제처(1981). 『국조오례의』, 서울 : 신흥인쇄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77). 『서울 육백년사』, 제1권, 서울 : 삼화인쇄주식회사.
- 송영성(1997). 「고려초기 시위군에 대한 소고」,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송인주(1997). 「고려시대 금군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신철호(1981). 『한국무술의 기원』, 서울 : 한국무술연구원.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원(1978).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 이민형 외(2008). 『한국경호사강의』, 서울 : 진영사.
- 이상철 외(2005). “견룡군과 금군에 관한 사적 고찰”, 『용인대학교논문집』
- 이상철(2005). 『경호현장운용론』, 서울 : 진영출판사.
- 이충수(1997). 「조선왕조시대 시위제도의 사적고찰」,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충수(2005). 「조선시대 시위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임동규(1991). 『무예사연구』, 서울 : 학민사.
- 장철원(2003). 「한국 경호제도 변천사 연구」, 우석대 박사학위논문.
- 전철기(1999). 「여말선초의 사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신문화연구원(1995), 『경국대전 역주본1』, 서울 : 정신문화연구원출판부.
- 차문섭(1995), 『조선시대 군제연구』, 서울 : 단국대 출판부.

논문접수일 : 2010년 8월 30일

심사의뢰일 : 2010년 9월 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12일